

우리 로스쿨의 바람직한 모습

林 智 奉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 目 次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특히 고려되어야 할 우리만의 특수성 |
| II. 사법개혁위원회 결정사항 | 1. 고비용과 로스쿨의 귀족화 가능성 |
| III. 미국에서의 법학교육과 로스쿨제도 | 2. 우리 변협조직과 로법조직의 취약성 |
| 1. 로스쿨제도와 로스쿨의 공인 | 3. 사법의 심각한 중앙집중화 |
| 2. 미국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 4. 떨어뜨리기 위한 과거시험인 사법시험 |
| 3. 미국 로스쿨들에서의 각 과정별 수업방식 | V. 한국 로스쿨의 바람직한 모습 |
| 4. 특별한 과목들에 대한 설명 | 1. 설립단계: 느슨한 인가주의와 정원규제의 문제 |
| 5. 교수진과 교수방법 | 2. 입학단계 |
| 6. 학생생활 | 3. 교육단계 |
| 7. 학생들에의 재정지원 | 4. 법조인 선발시험의 단계 |
| 8. 취업지원서비스(career services) | VI. 결론 |
| 9. 미국 로스쿨제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과거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하에서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강점을 받아들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좌절된 데는 대법원측의 반대도 중요한 몫을 했다. 그러나, 그 대법원이 2003년 초에 발표된 '사법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에서부터 그 방향을 선회하여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과거 우리의 로스쿨제도 도입 노력에 자극받아 로스쿨제로의 법학교육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던 일본이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들어갔다.

2003년 여름 대법원자의 대법관 후보제청과 관련한 파문을 모태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구성과 운영에 간여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동년 말에 출범하였다. 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른 여러 주제와 함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다루게 되었고 그 개혁의 유력한 방법으로 다시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차례에 걸친 분과위원회 토의나 전체회의에서의 토의가 있었지만, 로스쿨제 도입을 반대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로스쿨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루하게 반복되어 갔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월의 사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법학대학원 안 등을 제치고 로스쿨 안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임교수의 수의 문제, 교수 중 실무가의 비율, 총 입학정원수의 제한 문제 등에서는 어느 의견도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표기되어 함께 올라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나마 로스쿨제 도입의 큰 틀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법조인 선발 및 양성을 '선발 후 양성'에서 '양성 후 선발'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법조인의 능력은 한 번의 시험합격으로 검정될 수 없으며 평생을 통해 계속 길러져야 하므로 '점에 의한 양성'이 아니라 '선에 의한 양성'으로 가야 한다는 점, 사법연수원 등이 아니라 전문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에 속해 있는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중심에 있어야 법학 자체나 다른 분야의 학문이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2006년 초 정도에는 우리 변호사시장이 부분개방을 시작으로 개방되고 2011년이나 2012년경에는 완전개방이 될 전망이다¹⁾ 감안하면 로스쿨 도입이 때늦은 감마저 있을 정도이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도입 자체를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진해야 했다. 따라서, 로스쿨 인가기준과 로스쿨의 교육내용, 로스쿨의 수 등, 로스쿨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이를 결정하지 못했다. 아마도 올해 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나서 내년쯤에 설립될 예정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채워질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사법개혁위원회가 정한 한국 로스쿨의 몇몇 내용을 미국의 로스쿨제도와 비교해 보고, 특히 고려되어야 할 우리만의 특수성을 짚어보면서, 바람직한 한국 로스쿨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업은 자못 뜻 깊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로스쿨제도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1) 문재완, "로스쿨과 변호사 수의 문제에 대한 검토" 사법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자료 2면.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점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도입을 숙고해 보아야 하며, 어떤 것은 우리 현실의 특수성상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도 시도해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한국식 로스쿨제도'의 모색을 위한 한 값진 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사법개혁위원회 결정사항

우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 전체회의 때 결의하여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건의문의 형태로 전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은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여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설립하며 로스쿨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학부에 법학과를 둘 수 없다. 인가주체와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로스쿨 인가를 하도록 했다. 인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둘째, 인가기준의 물적 요소로서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을 요구하게 했다.

셋째,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넷째, 로스쿨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의 성적, 영어 등 어학 능력, 미국의 LSAT시험과 유사한 적성시험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며, 응시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했다. 로스쿨은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부법학전공자 및 당해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다섯째, 로스쿨의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본적으로는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서 각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가 양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못 박았다.

여섯째, 로스쿨은 증가된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도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원활한 로스쿨 교육을 위하여 로스쿨이 귀족화·보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의 재정상태, 장학금제도 등도 인가심사 대상 중의 하나로 하기로 결정했다.

일곱번째,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두어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교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인증평가기관은 법조인, 법학교수,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선언했다. 사후 평가에 있어서는 설립기준의 유지 여부,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평가기관이 사후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여덟번째,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했고, 갑작스러운 시험제도 변경이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간(2012년 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면서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홉번째,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원칙적으로 지역별 분리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다.

열번째, 2008년도에 최초의 로스쿨 입학생 선발을 목표로 로스쿨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以上の 사항들은 각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의안으로 건의문에 올라갔지만, 다음의 사항들은 어느 한 의견도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표기되어 건의문에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

첫째, 로스쿨 인가기준 중 인적 요소와 관련한 전임교수 수에 있어서, 다수의견은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15인 이하 또는 1 대 12인 이하'로 예시하면서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를 20인 이상으로 잡았지만, 소수의견은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12인 이하'로 못박고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도 25인 이상으로 잡았다.

둘째, 인가기준으로서의 실무가 교원 비율과 관련해서도, 다수의견은 실무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하고, 장기적으로 법조실무 경력자의 비율을 높여 나갈 것을 요구한 반면, 소수의견은 실무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전임교수 중 30% 이상을 5년 이상의

국내외 법조, 국제기구,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타 법률유관기관 실무경력자로 충원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꼭 변호사자격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셋째,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미리 수로 제한할 것인가에서 나타났다. 총 입학정원과 관련해, 다수의견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한 반면, 소수의견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도로만 정하기로 했다.

III. 미국에서의 법학교육과 로스쿨제도

1. 로스쿨제도와 로스쿨의 공인

미국에서의 법학교육은 “Law School” 혹은 “School of Law”라 불리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부수준에서는 교양법학으로서의 법학교육을 하지 않으며, 보통 학부에는 법학과가 없다. 현재 미국에는 공인된 로스쿨만 187개가 있으며,²⁾ 공인받지 못한 로스쿨들을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은 각 州별로 실시된다. 공인받지 못한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은 보통 변호사시험(Bar Exam) 전에 예비변호사시험(Baby Bar Exam)을 보아서 합격하여야지만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을 부여받으며, 그 학교가 소재한 州의 변호사시험만 볼 수 있고, 공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다른 州의 변호사시험은 볼 수 없다.

로스쿨에 대한 공인은 全美辯護士協會(American Bar Association, 줄여서 ABA)가 한다. 同協會는 1921년에 법대들에 적용할 공인기준으로 자세한 규정들로 이루어진 ‘全美辯護士協會의 로스쿨 공인기준(Standards for Approval for Law School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을³⁾ 만들고 이 기준에 의거해 신설 로스쿨들에 대한 공인여부를 결정하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부여에 관한 소위원회(Council of the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를 설치했다. 원래 미국에서 변호사는 州별로 변호사자격을 부여받으며 그 자격부여의 권한은 각 州의 대법원에 있다. 이 州大法院들이 全美辯護士協會의 ‘법학교육과 변

2) <http://stu.findlaw.com/schools/fulllist.html> 참조.

3) 원문은 <http://www.abanet.org/legaled/standards/standards.html> 참조.

호사자격부여에 관한 소위원회'를 한결같이 로스쿨의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로스쿨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그 로스쿨에 JD(Jurid Doctor)과정이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200여개의 공인된 로스쿨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 JD과정을 갖고 있다. 이 JD과정 이외에 JD 이후의 학위과정이라는 뜻에서 'Graduate Legal Studies'라 이름 붙여진 LLM 및 JSD과정을 가진 학교들도 있다. 미국의 공인된 187개의 로스쿨 중 100여개 정도의 로스쿨들이 LLM(Master of Law)과정을 가지고 있다. JD학위를 가진 변호사들이 어떤 한 법분야에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든지 미국에서 로스쿨 교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LLM과정에 진학한다. 1년 과정이다. LLM과정생만을 위한 과목은 대부분의 로스쿨들에서 따로 두지 않고 있다. JD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졸업학점이 20에서 24학점 정도이다. 이 중 논문학점이 보통 4학점을 차지하므로 졸업을 위해서는 한 학기당 3과목(보통 1과목당 3학점임)이나 많게는 4과목을 2학기에 걸쳐 듣고 논문을 쓰면 LLM학위를 받게 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한 두 과목을 더 듣는 대신 졸업논문을 면제해 주는 학교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LLM학위만을 가지고도 미국의 많은 州에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시장이 크기로 유명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모두 그러하다.

200여개의 로스쿨 중 다시 20개 정도의 로스쿨들이 학자로서의 법학박사과정으로 JSD(Doctor of Judicial Science), SJD, 혹은 "Ph.D in Law"로 명명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은 그 운영방식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년 정도 수업을 듣고, 그 후 박사학위논문을 써서 이것이 논문심사위원회를 통과 해야지만 학위가 나온다.

2. 미국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JD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부 학점평균(GPA)이 요구된다. 이 성적표에는 학점과 함께 반드시 그 졸업학년 전체인원 중에서의 석차가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 경우는 대학원 성적표도 동봉한다. 둘째,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점수이다. 이 LSAT는 법학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 법적 추론(Logical Reasoning, 50%), 분석적 사고(Analytical Reasoning, 25%), 독해(Reading Comprehension, 25%)의 세 분야로 이루어진 영어시험이다. 논리적인 사고력과 함께 빠른 독해속도(reading speed)가 요구되는 시험인 것이다. 셋째, 추천서이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추천서의 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통이나 3통 정도를 요구한다. 보통 학부 때 교수님들이나 현재 자기 직장의 상사 등 자신을 잘 평가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서 받는다. 넷째, 자기소개서와 공부계획서이다. 왜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JD 과정을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를 밝힌다.

3. 미국 로스쿨들에서의 각 과정별 수업방식

JD과정은 3년의 변호사과정이다. 이 JD과정을 마치고 JD학위가 있어야지만 미국의 어느 州에서건 Bar Exam(변호사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들에서의 수업은 이 JD과정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개설된다. 일반적으로 LLM과정이나 JSD(SJD)과정 학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과목은 따로 개설되지 않기 때문이다.

1학년 때에는 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부동산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증거법의 기본 6법을 중심으로 많은 수강생들을 - 한 반에 100명 이상 - 대상으로 하는 Lecture형식의 강의를 이루어진다. 선택과목은 없고 전부필수과목들이 일반적이다. 1학년 전체학생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반(module)으로 분반된다. 교강사는 반별로 강제적으로 정해지고, 자신이 그 과목의 교강사를 선택하여 다른 반에서 그 수업을 들을 수는 없다. 이 JD 1학년 때의 성적표를 가지고 JD 2학년 때부터 미국 전역의 로펌들에 인터뷰를 봐서 취직되는 로펌이 정해지기 때문에 1학년 때의 성적은 어쩌면 그 예비법조인의 평생의 직장과 수입을 좌우한다. 따라서, 이 1학년 기본 6법 수업의 분위기는 매우 경쟁적이며 살벌하다. JD 2학년 때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대부분의 과목이 선택과목들이다. 자기가 관심이 있고 특화하고자 하는 법분야의 과목들만 골라들으면 되는 것이다. 기본 6법 이외의 과목들이 대부분인 이 과목들은 많은 경우 Seminar수업으로 이루어진다. Seminar수업은 Lecture수업과는 달리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 수강하면서 수업도 학생들에 의한 주제발표나 토론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학년 초에 각 로펌의 job interview에서 졸업 후 근무하게 될 로펌이 정해진 학생들이 많고, 그 경우에는 그때부터 별로 성적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업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진다. 특히 2학년초의 job interview에서 로펌이 결정된 학생들은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에 올라가기 전의 여름방학 때 그 로펌에서 초임변호사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으며 intern으로 일하게 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JD 3학년에 들어서는 수업도 2학년에 들어서는 수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분위기는 2학년 수업보다 더 좋아진다. 3학년 초의 job interview에서 로펌에 취직되는 학생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이다.

4. 특별한 과목들에 대한 설명

미국 로스쿨들에는 우리나라 법과대학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몇몇 특별한 과목들이 기초과목으로 개설되어 주로 JD과정 학생들이 반드시 수강하게 되어 있다. 이 과목들은 주로 법률문장론, 법학연구방법론, 모의재판 등과 같이 법학연구의 수단이 되는 연구기술, 법률문장 작성방법, 재판이나 변론방법들을 실무적으로 가르치거나, 법조윤리를 가르치는 과목들이다. 또한 임상법학교육 과목들도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의 하나로서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는 미국법학교육의 단면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과목들이다. 이 과목들을 살펴보면, 법학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 로스쿨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과목들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게 된다.

첫째, 법률문장론(Legal Writing)은 보통 JD과정 1학년 1학기나 2학기에 각각 2학점씩 4학점을 배당하여 1년 동안 법률문장의 작성방법 등을 가르치는 과목이다. 전임교수보다는 외래강사, 2학년 혹은 3학년의 수업조교(teaching assistant)들이 많이 가르친다. 특히 법률문장 연습에서는 社内回覽用 事件摘要書(office memorandum)와 변론서(brief)의 작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데, 전자는 그 담당 사건을 총괄하는 파트너 변호사에게 그 예하의 팀원인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후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사건 개요 및 법적 쟁점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법규나 선판례가 인용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법학연구방법론(Legal Research)도 주로 JD과정 1학년 학생들에게 개설되는 과목으로, 앞으로 변론서나 법률문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판례검색 및 그 인용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교육한다. 판례 등의 인용문헌 검색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2대 법률문헌추적 컴퓨터 프로그램인 Westlaw와 Lexis/Nexis 등의 활용방법을 배운다. 법률문헌의 인용훈련을 위해서는 Harvard 로스쿨에서 출간한 Bluebook(통일인용규칙 '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이 보통 주교재로 사용된다.

셋째, 모의재판(Moot Court)은 보통 2학년 학생들을 수강대상으로 하는데, 1학년 때 배운 Legal Research과목의 연장선상에서, 두세명씩 한 팀을 만들어 실제로 모의재판을 준비하게 하는 과목이다. 상황이 항소심으로 지정되므로 항소이유서(appellate brief)를 쓰고, 그 로스쿨 동창생인 판사나 변호사가 판사인 모의법정에서 실제로 구두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두변론에 대한 많은 연습이 된다. 이 때, 그 로스쿨 선배인 모의법정 판사는 구두변론에 대해 법적 논리의 허점을 짚어

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게 된다.

넷째, 법윤리(Legal Ethics)도 강의된다.全美辯護士協會는 1908년에 '변호사윤리강령(ABA Canon of Ethics)'을 채택했고, 1969년에는 '법조직무책임에 관한 규정(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을 채택했다. 1970년대 초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 이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닉슨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전부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법조윤리에 관한 많은 규정들이 연방이나 州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생겨났고, 그 이후 이 규정들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법조윤리(Legal Ethics)"나 "법조직무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라는 과목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각 州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이외에 이 법조윤리에 관한 별도의 시험에서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고자 하는 州에서 요구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법조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임상법학교육이 이루어진다. 가족법 클리닉, 고용차별법 클리닉 등과 같이 그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 Clinic활동을 통해 법대생들이 실제 사건을 맡아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해 나가게 하는 법학교육 과목들이다. 주로 JD과정 1학년에서 기초적인 법지식을 갖춘 후에 JD과정의 2,3학년 학생들이 이 임상법학교육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 교수진과 교수방법

미국 로스쿨의 교수진은 주로 좋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 유명한 판사의 재판연구원(law clerk)을 했든지, 좋은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든지 하는 팔목할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미국 로스쿨의 교수들 중에는 JD와 함께 JSD나 LLM학위를 가진 이들보다 JD학위가 최종학위인 이들이 많다. 그리고, JD학위와 함께 법학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석사(MA)나 박사(Ph.D.)학위를 취득한 이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JD학위 없이 비법분야에서의 Ph.D.학위만을 가지고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들도 많이 있다. U.C. Berkeley와 Yale 로스쿨에서는 JSP(Jurisprudence & Social Policy)과정이라는 일종의 법정정책학과정을 로스쿨 내에 두어 법학과 여타의 사회과학간의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JSP과정의 교수들은 거의가 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심지어 공학이나 자연과학 계통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이들에 의한 교육은 따라서 실무적 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이론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도입했을 시에, 로스쿨에서의 법실무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는 법학교수가 적다는 식의 주장은 로스쿨 교육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법실무 경험은 커녕 법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비법학분야 Ph.D. 소지자들도 좋은 로스쿨에서 법학교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법학교육에는 임상법학교육과 같은 법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법이론 교육도 반드시 중심에서 있어야 함을 웅변해주는 대목이다.

미국 로스쿨 교수들의 교수방법은 과목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형과목인 Lecture 과목의 경우 '소크라테스식 강의방법(Socratic Method)'을 사용한다. 소크라테스식 강의방법이란 과거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방식처럼, 결론적인 부분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답변을 통해 스스로 진리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교수법을 말한다. 그러나, 소형과목인 Seminar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교수간의 '토론(discussion)'을 통한 학습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6. 학생생활

미국 로스쿨은 학과공부만 강조되는 곳이 아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 학생들이 학과공부 이외의 것에서도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좋은 경험들을 쌓아나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로스쿨에서의 학생생활은 도전해볼만한 과목들, 교수나 학생, 동창들과의 학문적·친목적인 교류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이외에도 학생조직들에의 자발적 참여,⁴⁾ 학생들이 편집하는 법학논문집(Law Review)의 편집과 논문집필에 참여할 기회,⁵⁾ 대학 캠퍼스의 여러 활동들에 참여할

4) 예를 들어, U.C. Berkeley 로스쿨 내에는 다양한 학생조직들이 존재해 학생들간의 친목을 꾀한다든가, 여러 계층과 그룹의 권익신장을 위한 실제 활동들을 벌이는 공동의場이 되고 있다. 버클리 법대 학생들의 자치기구이면서 등록학생 전원을 그 회원으로 하는 Boalt Hall 학생회 이외에도 인종별, 지지정당별, 종교별, 관심법분야별 학생조직들과 소수자그룹 학생조직들이 명멸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직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대인 학생회, 민주당원 학생회, 환경법학회, 버클리 법대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학생회, 여학생회 등이 그 예이다.

5) 예를 들어, 미국 U.C. Berkeley 로스쿨에는 학생들이 편집활동에 참여하는 법학논문집으로 버클리 법대의 간판논문집인 California Law Review, 흑인사회를 비롯한 유색인종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법적 정책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적 담론을 쌓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African-American Law and Policy Report,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들과의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 Asian Law Journal, 고용법과 노동법의 현대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Berkeley Employment & Labor Law Journal, 국제법의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는 논문, 판례 평석, 서평들을 싣고 있는 Berkeley International Law Journal, 미국 내 라틴민족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법적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Berkeley La Raza Law Journal 등이 있다.

기획, 로스쿨 인근지역의 문화와 생활방식의 향유, 변호사업계나 정부, 학계의 저명 인사들이 강사로 나오는 여러 강의, 심포지움, 회의에의 접근으로 풍성해진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그들의 로스쿨 생활들을 살찌운다는 점을 로스쿨생활을 통해 서서히 알게 된다.

7. 학생들에의 재정지원

로스쿨의 학비는 다른 일반대학원에 비해 비싼 편이다. 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어 로스쿨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직업학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립대학의 경우 일년에 \$15,000내외의 학비가 들고 동부 사립 아이비리그 로스쿨의 경우 일년에 학비만 \$30,000 이상이 든다.

따라서, 로스쿨 학생들은 많은 경우 각종 장학금에⁶⁾ 의존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학자금 융자를 통해 학비를 해결하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얼마씩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학비대여를 받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법대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아주 드문 편이어서 보통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고 은행 등이 저리로 융자하는 학비대여에⁷⁾ 많이 의존한다.

8. 취업지원서비스(career services)

로스쿨내에 취업지원사무처(Office of Career Services, 줄여서 OCS)가 있어 방학 중 인턴으로 일할 로펌에 대한 정보 제공, 정식 로펌 취직을 위한 각종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다. 로스쿨 졸업생의 상당수가 졸업 후에는 재학 중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일했던 로펌에 취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취업지원사무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6) 예를 들어, 버클리대 로스쿨 학생들이 이용하는 각종 장학금이나 학비대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학생원조프로그램(Federal Student Aid)' 이외에 1학년 성적우수자에게 주어지는 Boalt Hall Fellowships, 성적과 함께 곤궁정도도 고려되는 외부장학금인 Boalt Hall Endowment and Gift Fellowships,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 학생들에게 연구장학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Boalt Hall Fee Grants 등이 있다. 로스쿨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일자리를 얻어 일할 수 있게 하는 Work Study도 대부분의 법대생들에 의해 이용된다.

7) 학자금 대여는 미국 로스쿨학생들이 학비를 충당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다. 포드연방학비대여금(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s), 펄킨스학비대여금(Perkins Loans), 代案的인 私的 학비대여금, 대학측이 제공하는 단기비상대여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자금대여는 보통 무이자나 저리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한다. 대부분의 학비대여는 연방정부의 보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합중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그 수혜자격이 제한된다.

보통 여름방학 동안에도 취업과 관련해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고용관련 카운셀링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취업지원사무처를 열어 놓는다. 그 로스쿨 졸업생인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의 연락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로펌 인턴이나 판검사 시보로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졸업생들은 졸업시 취업조사서를 작성해 취업지원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全美辯護士協會나 로스쿨의 순위를 매년 매기는 U.S. World & Reports에서 로스쿨 평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취업지원사무처는 변호사를 뽑으려는 로펌들의 리스트를 매일 갱신하여 게시한다.

9. 미국 로스쿨제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以上에서 살펴본 미국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미국식 제도의 특징 내지 장점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로스쿨이라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킴으로써 태생적으로 '법률가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이는 헌법전문 법률가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이는 상법이나 경제법, 국제거래법 등의 전문 법률가로, 공학을 전공한 이는 공업법이나 지적 재산권법 등의 전문 법률가로, 자연과학을 전공한 이는 환경법 전문 법률가로, 자신의 학부전공을 배경으로 관련분야의 전문 법률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학부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그 기반이 된 이들에게 법학교육을 시킬 때 법학자체도 명실공히 종합학문으로 발달해나갈 수 있고, 이런 전문법률가들이 길러져야만 이들이 학부에서 취득한 자기분야에서의 지식과 로스쿨에서 배운 법적 테크닉을 접목시키면서 해석학이 아니라 입법론에 입각한 법이론과 법실무를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판검사나 개업변호사의 직역 이외에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의회나 행정부에 들어가 전문분야의 법정정책 입안자, 법정정책 결정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토대가 대학원과정의 로스쿨교육을 통해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작금처럼 법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이들을 대학원과정에서 교육시키는 로스쿨제도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법률가들의 양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믿으며, 우리가 로스쿨제도로 가야한다면 이것이 로스쿨제도로의 개혁의 가장 주된 이유요 명분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둘째,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한된 응시자들 가운데에서 60% 이상의 높은 합격률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미국식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부담이 별로 없다. 이런 '로스쿨 졸업생에게의 응시자격 제한'과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미국 법률가 양성제도의 큰 두 개의 뼈대를 형성하면서, 로스쿨이 법률가 양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이 비로소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법률가'라는 직업이 일정기간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직'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소 부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듯 변호사시험이 아니라 로스쿨교육이 주(主)가 되어야만, 환경법이나 지적 재산권법, 의료법, 국제거래법 등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과목에 대해서도 관심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것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을 준다.

셋째, 로스쿨교육은 '임상법학교육'이라는 강점을 통해 변화에 유연한 법률가들을 양성해낼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진다. 각종 법률클리닉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법을 체득케 하는 이 임상법학교육이야말로 실제 "기존의 법제도나 법실무 관행을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갖도록 교육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어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지만 이러한 기술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도 가르친다. 이런 임상법학교육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들은 현실의 법적 변화에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즉,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법학교육이 되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법률가 양성은 로스쿨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교육이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로스쿨 졸업 후 로펌 등에 취직하여 최소한 5년 정도 열심히 실무를 익혀야 비로소 하나의 법률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법이론 교육은 로스쿨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법실무 교육은 로펌들에서 월급받고 일하면서 받게 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로스쿨에서 실무 전반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미국 법학교수에게 미국 법학교육의 목표가 뭐냐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법률가처럼 사고하게(to think like a lawyer)" 가르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법률가가 가져야할 'Legal Mind'를 길러주는 것이 로스쿨교육이고 법실무의 내용적인 면은 변호사로서 일을 해가면서 배우게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최근 미국의 로스쿨교육이 실무보다는 너무 이론중심으로 치우쳐 "법률가처럼 사고하게"가 아니라 법학자인 "법학교수처럼 사고하게(to think like law professors)"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⁸⁾ 물론, 현

8) Harry T. Edwards는 그의 논문을 통해 법학교육은 너무 이론중심으로 가고 로펌들은 너무 영리위주로 흘러 진정한 의미의 법실무 교육은 로스쿨이나 로펌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Harry T. Edwards, The Growing Disjunction Between Legal Education

재의 미국 로스쿨교육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다.⁹⁾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법현실과 법기술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로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다만,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세부적 내용 중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충분한 검토 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특히 고려되어야 할 우리만의 특수성

1. 고비용과 로스쿨의 귀족화 가능성

미국 로스쿨제도의 최대 약점은 '고비용'이라는 데 있다. 학부를 나온 사람들을 모아다가 3년간의 법학교육을 시키면서 연간 작게는 만여달러에서 많게는 삼만 달러가 넘는 등록금을 요구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이 학비를 내는 이외에도 그 기간 취업시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잃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학생 측에서 부담해야 할 로스쿨 교육의 비용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문직업교육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크다. 학교측에서도 학생 대비 교수의 수를 일정 정도로 유지해야 하므로 많은 교수들을 고용해야 하고, 법학은 물론이고 인접사회과학이나 심지어 법관련 자연과학, 공학 계통의 서적까지 갖춘 법학도서관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의법정을 비롯해 여러 대형강의실과 세미나실들을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이러한 인적·물적 시설의 완비와 유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로스쿨 교육에서 나오는 산출성고가 작다면, 효율의 면에서 이 법학교육방식은 그 채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국민경제의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고비용을 감당하면서 로스쿨을 나와 법조인이 될 사람들은 부유층에 한정되기 쉬워 문제이다. 과거처럼 학부단계의 법과대학을 나오거나 심지어 법학교육과정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시대에는, 넉넉지 못한 집안의 자제들도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고 실제로 그들 중의 상당수가 법조인이 되었다. 하지만, 법학교육과정이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로 올라가게 되면 넉넉지 못한 계층에서도 어

and the Legal Profession, 91 MICH. L. REV. 34, 34 (1992).

9) 이러한 지지입장의 예로는 Duncan Kennedy, Legal Educ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Hierarchy: A Polemic against the System, 34 AM. U. L. REV. 939, 991-1001(1985) 참조.

렵게 로스쿨까지 나와 법조인이 되려할까. 법조인의 산실인 로스쿨이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면서 결국은 법조 전체가 귀족화되고, 귀족화의 결과가 항상 그러하듯 법조 전체가 보수화하는 것은 아닐까.

법은 부유층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며 법조집단이 귀족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오히려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무기이어야 하고 법조인은 이들 약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이들의 대변인이어야 한다. 고비용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로스쿨이 부유층에 의해 독점되고 나아가 법조전체가 귀족화·보수화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뒤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이를 위해 로스쿨 입학생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일정비율의 할당을 주어 이 비율만큼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중에서만 뽑는다는지, 이들이 학비 걱정없이 법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우리 변협조직과 로펌조직의 취약성

미국 변호사협회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많은 예산을 집행할만큼 규모도 크다. 위에서 보았듯이, 全美辯護士協會(ABA)가 그 산하기관인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부여에 관한 소위원회'를 통해 협회 자체에서 만든 '로스쿨 공인기준'을 로스쿨 신청 대학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공인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로스쿨 공인을 주도한다. 각 州의 州辯護士協會는 등록 변호사들을 관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 후의 법률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변호사들의 법률 재교육에 힘을 쏟는다. 이러한 변협의 중요한 활동들은 그 탄탄하고 두꺼운 조직과 넉넉한 재원의 뒷받침 때문에 가능하다. 미국 로펌들도 많은 로펌들이 규모도 크고 업무분야도 세분화·전문화 되어 있어, 초임 변호사들을 업무지도를 통해 실무적으로 훈련시킬 인적·물적 기반을 충실히 갖추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협회는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전국 단위의 대한변호사협회도 그 조직의 상근근무자 수도 적으며 예산도 많지 않아, 미국과 같은 로스쿨 공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그 역량이 충분치 못해 보인다. 지방변호사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해서, 전국 변호사의 65%정도가 등록되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변호사회의 경우는 그 조직 및 예산이 탄탄하지 못하여 미국의 '변호사자격 취득 후의 법률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과 같은 변호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실상의 실무훈련이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러

한 실무훈련을 제대로 담당해 낼 정도의 탄탄한 로펌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대형 로펌들마저도 변호사 보수를 로펌이 주는 만큼 변호사들의 실무훈련에 로펌이 나서야 한다는 것 보다는 변호사들이 보수에 상응하는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로스쿨 졸업 후의 변호사 실무훈련이 로펌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질 토양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의 법률가다운 사고훈련과 로펌에서의 실무훈련으로 잘 분업화되어 있기에 미국 로스쿨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각종 변호사 협회의 체제 정비와 인적·물적 보강, 로펌의 실무훈련 체제 강화가 한국 로스쿨 성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3. 사법의 심각한 중앙집중화

우리는 입법 및 행정의 다른 영역도 그러하듯 사법도 심한 중앙집중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나 검사들이 서울지역에서의 근무를 뚜렷이 선호하며 많은 판점사들이 지방근무시 가족들은 서울에 둔 채 평일에는 혼자서 지방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경우도 전국 변호사 중 65% 이상이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으며, 경기권까지 합치면 80% 가량의 변호사들이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 상시 거주하는 판점사의 수나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의 수는 서울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심각한 사법의 중앙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법 중앙집중의 가장 큰 폐해는 지방 거주 국민들이 서울 거주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사법서비스 혜택을 공평하게 같은 정도로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다는데 있다. 이것은 정의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특히 중시해야 하는 사법의 속성과도 배치된다.

전국적인 법 적용 및 법집행의 통일성을 어느 정도는 기할 수 있어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원래 그 지역의 법 적용과 법집행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아는 이들이 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사법의 중앙집중화보다는 사법의 지방분권화가 더 바람직한 면이 많다. ‘법’이라는 규범이 강한 속지성을 가지는 까닭에 ‘법 적용과 법집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강한 지역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을 논함에 있어 고등상고부 설치를 세 가지 안(案)중의 하나로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제3심을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 설치된 상고부에서 맡게 하여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소수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보다 더 집중케 함으로써 대법원을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바꾸어 나가고 사법의 무게중심을 상당부분 고등법원으로 이동

케 하여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이루겠다는 포석이 여기에 깔려있다. 또한,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를 확대하여 2012년 까지는 전체 신규임용 법관의 50%를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뽑게 하고 이 중 원로급 변호사들의 향판(鄕判) 임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 또한, 그 지방거주 변호사들의 그 지방 사법부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에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로스쿨 인가에 있어서도 지역적 균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중앙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사법의 전국적 균형을 이루어 지방민들도 서울거주자와 같은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 인가는 얼마나 좋은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공평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지방에 무조건 반수 정도의 로스쿨을 할당하는 식의 사고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법의 지방분권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하며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지역의 로스쿨에서 그 지역공동체의 사법을 이끌 미래의 법조인들을 양성해 사법 지방분권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은 '로스쿨 인가의 자유경쟁' 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4. 떨어뜨리기 위한 과거시험인 사법시험

미국의 각 주 변호사시험은 한국의 사법시험만큼 합격하기 어렵지는 않다. 1년에 2월말과 7월말 2회 실시되는데 州마다 다르지만 매회 응시자의 60%정도가 합격하는 자격시험이다. 미리 합격인원을 정해 놓고 치루는 상대평가방식의 과거시험은 아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사법시험은 조선시대 과거의 전통을 잇고 있는 상대평가방식의 사법관리 등용시험이다. 법조단체와 정부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 미리 정해지게 된 합격자수에 맞추어 합격자가 정해진다. 응시자의 수가 1만명을 넘고 3만명을 넘으면서 사법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지식과 그 법지식의 현실적용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별로 활용해 보지도 못할 잡다한 법지식들까지 무조건 암기해야하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법조인 선발시험이면서도 기회의 균등을 구실로 법과대학 졸업 등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지원자가 많았다. 이 많은 지원자 중에 극소수의 합격자를 뽑다보니 시험은 법조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만 알면 붙는 시험이 아니라, 별로 알 필요도 없는 사항까지도 실수없이 답으로 써 내야 붙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되어버렸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사법시험을 변호사선발시험으로 또 자격시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로스쿨제도라는 것이 원래, 로스쿨에서 충실히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법조인이 된 이후에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경쟁을 통해 훌륭한 법적 분쟁의 해결자로 커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이 종래처럼 합격자수를 미리 소수로 정해놓는 상대평가방식의 과거시험으로 남아 있다면,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로스쿨제도와 떨어뜨리기 위한 과거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은 원래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V. 한국 로스쿨의 바람직한 모습

다음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우리 사법개혁위원회의 한국 로스쿨에 대한 결정사항, 미국의 로스쿨제도, 우리만의 특수성을 골고루 고려하여 단계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미래 한국 로스쿨의 바람직한 모습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다수·소수의견으로 나누어진 사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1. 설립단계: 느슨한 인가주의와 정원규제의 문제

미국에서는 全美辯護士協會(ABA)가 로스쿨의 공인기준도 만들고 사실상의 공인기관이기도 하다.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각 州의 州大法院이 관장하는데, 州大法院들은 한결같이 ABA가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 자신들이 공인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ABA를 공식적인 로스쿨 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BA의 로스쿨 공인기준'(예를 들어,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20 대 1 정도로 함)을 맞춘다고 자동적으로 로스쿨로 공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준칙주의는 아니지만, 이 기준을 맞추면 거의 공인을 받고 있으므로 미국은 '느슨한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일정한 정도의 전문법학교육을 행할 수 있게 인가기준을 높게 유지하고 로스쿨 인가 후에도 그 인가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철저한 사후평가를 행함으로써, 로스쿨 법학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국 로스쿨의 일년 학생정원을 1,200명 등으로 못박고 가는 것은 '엄격

한 인가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미국의 '느슨한 인가주의'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문제가 많다. 로스쿨교육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지원 학교들에는 긴절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인가된 로스쿨들을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 이 경쟁을 위해서는 로스쿨 졸업 후 치게 되는 사법시험을 대략 80% 정도의 높은 합격률을 내는 너무 쉬운 시험으로 하기 보다는 60% 내외의 합격률을 내는 시험으로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로스쿨 인가 경쟁보다는 로스쿨 인가 후의 로스쿨 생존경쟁이 로스쿨시장을 통해 불붙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증평가의 문제와 관련해 인증평가는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증평가기관을 법조인, 법학교수, 시민대표로 구성하는 것도 인증평가의 객관성·중립성과 전문성의 동시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겠지만, 인증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에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반대다.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미국 ABA가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취약한 조직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을 통해 양성된 법조인들이 들어가는 협회이므로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 수'라는 면에서 봤을 때 직역 이기주의가 끼어들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증평가기관은 법조인들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이용자인 시민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야 하고 탄탄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면서 조직과 예산면에서도 인증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ABA가 인증평가 업무를 맡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미국과 우리의 차이를 도외시한 안일한 주장이다.

2. 입학단계

(1) 입학자격과 입학시험

입학사정의 한 요소로 '어학능력'을 포함시킨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한다. 로스쿨제도란 국제화·전문화된 미래 세계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들을 해결해 나갈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정요소인 '적성시험'이란 위에서 본 미국의 LSAT와 유사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학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과열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양한 학부 전공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법학교육을 시켜 이들이 로스쿨 졸업 후 보다 더 용이하게 자신의 전공영역에 특화

되고 전문화되게 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학부법학전공자의 선발비율은 일정 비율 이하로 묶어 둘 필요가 크다.

(2) 장학금과 학생구성의 문제

미국의 많은 로스쿨들에서는 흑인, 여성, 빈곤층 학생의 로스쿨 진출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입학시 할당제를 적용하여 일정비율을 이들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및 약자층에서만 뽑고 이들에게 졸업 후 소수자, 약자를 위한 공익변호사로 일하는 조건 등으로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것은 로스쿨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미래의 법조가 보수화되고 귀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및 약자층에 대한 로스쿨 할당제 입학이나 로스쿨 장학금 제도는 '미국 법조의 보수화와 귀족화 방지'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 오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 고비용의 로스쿨 학비를 델 층이 두텁지 않다는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할당제 입학이나 장학금 지원 가능여부는 로스쿨 인가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3. 교육단계

(1) 로스쿨 교수진 구성의 문제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실무교육'으로 착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에서 마저도 "로스쿨제도는 법조실무경험자들이 실무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데에 핵심이 있음. 그리하여 미국로스쿨에서 변호사 등 실무경력자 출신 교수가 전체 교수 숫자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그 취지에 충실하게끔 교수진의 거의 100%가 법률실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자 중에서 임용되어야 함."이라는¹⁰⁾ 근거없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로스쿨 중 톱 10에 드는 U.C. Berkeley 로스쿨의 경우¹¹⁾ 그 교수진의 취득학위를 분석해 본 결과, 총 74명의 교수 중 JD 학위

10)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사법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자료(2004. 9. 20.)

11) U.C. Berkeley 로스쿨은 미국에서 8위권 정도의 로스쿨로 주립대학 로스쿨이며 강사(18명), 명예교수(18명), 교환교수(타학교 소속 교수, 7명)를 제외한 전임교수 74명의 인터넷상의 프로필 분석을 통해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둔다. 자세한 임지봉, "미국 로스쿨 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 배포자료 참조.

만 있는 교수는 26명(35.13%), JD학위에 다른 분야 MA까지 있는 교수는 10명(13.5%), JD학위에 LLM/JSD학위까지 있는 교수는 4명(5.4%), JD 학위에 다른 분야 Ph.D까지 있는 교수는 15명(20.27%), 로스쿨을 전혀 다닌 적이 없으며 법학 이외의 다른 분야 Ph.D만 있는 교수는 18명 (24.32%), 로스쿨을 전혀 다닌 적이 없으면서 법학 이외의 다른 분야 MA만 있는 교수도 1명(1.35%)이 있었다.

교수들의 학위에서 JD학위가 없는 교수들도 25.67%나 된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JD란 미국 로스쿨에서 기초법학과정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로 우리의 경우 학부 법학과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법학사'에 해당하는 학위이다. 따라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학부 법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법학교수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학의 교육이나 연구는 법학전공자만으로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미국 로스쿨들이 일찍이 깨닫고 타학문 분야의 방법론이나 연구성과를 법학의 교육과 연구에 받아들인다는 '학제간 연구와 교육'의 방식을 채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둘째로 교수 이전의 경력을 조사해보니, 총 74명중 버클리 법대 교수가 되기 이전에 개업 변호사, 로펌 변호사, Public Defender 활동 등의 각종 변호사활동을 한 경우가 11명(14.86%), 행정부나 시민단체에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법학교수가 된 경우가 4명(5.4%), 연방법원판사의 Law Clerk도 하고 각종 변호사활동도 한 후에 법학교수가 된 경우가 5명(6.75%), 연방법원판사의 Law Clerk만 하고 법학교수가 된 경우가 22명(29.72%), 대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 등 학계에만 있다가 버클리 법대 교수가 된 경우가 32명(43.24%)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수 이전의 경력에서 Law Clerk을 하거나 학계에서만 있다가 온 경우가 약73%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 실무를 거친 사람은 27%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국로스쿨에서 변호사 등 실무경력자 출신 교수가 전체 교수 숫자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는 위의 대한변협 의견서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를을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 실무를 거친 교수들은 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소송법 과목이나 2, 3학년 때의 Clinic과목의 강의에 투입되며 헌법, 계약법, 부동산법, 불법행위법, 형법 등 기본법들을 비실무가 출신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추가조사에서 드러났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스쿨제도라는 것은 실무가가 법실무를 가르치는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부 배경을 가진 20대 중반의 성숙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케이스북을 통한 사례학습이나 세미나 수업을 통한 주제별 심화토론학습을 통해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

이 로스쿨 졸업 후 비교적 쉬운 변호사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로 진출한 후 자신의 학부배경 등의 분야에 전문화된 법률전문가로서 복잡다기한 미래의 법적 분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는 데 핵심이 있다고 믿는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오늘의 실무'가 자동적으로 '내일의 실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미래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가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교과과정의 문제: 이수학점, 연차별 과목

로스쿨에서 이러한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가능케하는 교과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 커리큘럼은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서 각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가 양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족을 달기는 했지만 말이다. 헌법,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등), 형법 및 각종 소송법(증거법을 포함) 등의 기본법과목은 미국처럼 1학년 과정에서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형식으로 이를 가르쳐 법적 기초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본법과목들은 모두 전공필수로 해서 반드시 수강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20명 정도의 반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소수의 학생이 교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이 기본과목들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후 2·3학년에 올라가서는 국제거래법, 환경법, 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법철학, 법제사,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특별한 전문분야를 파고드는 법과목들을 개설하고 이를 선택과목으로 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이 장래 자신이 특화하고자 하는 분야의 법과목들을 선택해 골라들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 법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야 하며, 적어도 기본법과목의 교수들보다 특별 법과목의 교수들이 더 많아야 한다. 기본법은 1학년에 1년간 강의되지만, 이들 과목들은 2·3학년에 걸쳐 2년간 강의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미국 로스쿨에서의 각종 클리닉 과목들도 설강되어 로스쿨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여러 법률적 분쟁에 직접 뛰어들어 이를 상담하고 직접 소송대리에도 보조적으로 참여해 봄으로써 배운 법지식을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이런 클리닉 과목들에는 실무가 출신의 교수들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로스쿨의 전체 이수학점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하

지만, 로스쿨이 추구하는 '전문교육'이 가능한 정도의 필요최소한의 학점은 요구되어야 한다.

(3) 교수 방식의 문제

교수 방식에 있어서도 이를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 과목이 1학년의 기본법 과목이라면 법적 사고의 체계를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토론 보다는 소크라테스식의 문답식 강의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2,3학년의 특화된 법과목의 강의에는 법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줄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특정 분야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고양시키는 교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법조인 선발시험의 단계

법조인 선발시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면 별 큰 무리없이 합격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지식을 묻는 자격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있으나마나 한 너무 쉬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로스쿨 간의 일정 정도의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로스쿨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만이라도 미국처럼 대략 응시자 중 60% 내외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합격률이 너무 낮은 시험이 되면 현재의 사법시험처럼 되어 합격을 위해서는 몇 수를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이 되고 이것은 로스쿨 법학교육의 성격을 시험준비 교육으로 변질시키고 시험준비학원이 성시를 이루게 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이 그대로 재연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현재의 문제점은 그대로 되살아나면서 로스쿨 3년의 기간과 비용을 추가하는 개악이 되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할 바이다. 로스쿨제의 성공을 위해 법조인 선발시험의 테스트 내용과 난이도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VI. 결 론

사법개혁위원회는 10여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말쑥한 로스쿨제를 도입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희생이 뒤따랐다.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체적인 한국 로스쿨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제도 비교와 연구를 통해 한국 로스쿨의 모습을 2008년의 그 시행전까지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한다. 로스쿨제도는 도입했으되 그 내용을 잘못 채워가면 기존의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 양성 및 선발제도 보다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법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한국 로스쿨의 바람직한 모습과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일만 남았다. 그에 대한 깊이있는 본격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